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5.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1. 7.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

택배서비스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시행을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변경등록 포함) 및 등록취소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나. 영업점에 대한 관리(안 제6조)

영업점의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적 및 계획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법률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

다.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거절사유 등(안 제7조, 제8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운송 위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송 위탁 계약 해지 절차 예외 사유를 정함

라. 택배서비스사업의 휴·폐업 신고 등(안 제9조, 제10조)

택배서비스사업 휴·폐업 신고 시 신고서 제출 등 절차를 정하고,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 방법을 규정함

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 도입(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인증제 시행을 위하여 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인증 표시 방법을 법제화 함

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제16조, 제17조, 제18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인증 심사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업무 등을 규정함

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제20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요하는 중요사항을 규정하여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변경 수립될 수 있도록 함

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정책협의회(제21조, 제22조)

국토교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자.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안 제23조, 제24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실태조사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함

차. 행정·재정 및 창업지원(안 제25조, 제26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관련 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카.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타. 표준화 및 시범사업의 실시(안 제30조, 제31조)

생활물류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표준화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추진절차, 지원방식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함

파.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지원 등(안 제32조, 제33조, 제34조)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을 정하고, 물류시설 가격기준 및 생활물류시설 용지 확보비율의 특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하.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안 제35조, 제36조)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및 작성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물류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서비스 약관의 신고절차 및 포함사항을 규정함

거. 시장질서 유지(안 제37조, 제40조)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택배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금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품질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명령·권고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너.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안 제38조, 제39조)

생활물류서비스 품질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기준 및 방법·절차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방법을 규정함

더. 사업자 단체의 설립(안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협회의 설립절차 및 사업을 마련하고,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한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조합의 인가, 정관 및 운영·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함

러.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6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 중 시·도지사 위임 및 관계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함

머. 수수료 및 과태료(안 제47조, 제48조)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등에 필요한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입법예고 예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발급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2.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업점, 화물 분류시설 및 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영업점이나 화물 분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동사용에 대한 업무협약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사무소 및 영업점, 분류시설 및 취급소 등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5.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7. 화물의 집화·분류·배송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이용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 신규로 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차량의 확보 및 운영 계획, 운송위탁 계약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2항의 서류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을 접수하는데,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제4조(변경등록) 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서류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을 접수 하는데, 변경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점, 화물분류시설, 화물취급소의 이전 및 개소의 변경
2. 화물분류시설 면적의 변경
3. 차량 대수의 변경

② 제1항의 사항을 변경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에 대하여 해당 영업점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영업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현황
2.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

적 및 계획

3.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실적 및 계획

②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영업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점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이 관계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2.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영업점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통보에 대한 촉구
3.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이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의 요구

제7조(운송 위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2.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3.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49조제4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소재 불명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운송 위탁계약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운송 위탁계약 해지 절차의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된 경우

4.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

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5.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사고·질병 또는 국외 이주 등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탁받은 택배서비스 운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택배서비스종사자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알린 경우

제9조(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등 반납)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 반납 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1조(등록취소 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제12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자로서, 이를 위한 정보통신망과 인력 등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자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는 자에게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화물 배송을 중개하거나 중개하려는 자로서, 이를 위한 정보통신망과 인력 등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자

제13조(인증의 기준)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를 갖출 것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안전하게 화물을 배송 할 수 있도록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운영체계를 갖출 것

3.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무상황 및 경영능력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인증의 절차) ①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제13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의 인증 대상과 제13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3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제13조에 따른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1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받은 자가 제13조의 인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인증의 표시) ①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운송 상자, 홍보물, 홈페이지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인증의 도안, 규격 등 표시 방법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심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있을 것
2. 전담조직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책임자와 인증심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둘 것
 - 가. 물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물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7조(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절차) ① 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6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및 해당 기관의 심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대행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심사대행기관의 명칭과 주소
2.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
5. 심사대행기관의 지정 연월일

제18조(인증심사대행기관의 업무)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의 접수
2. 제13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14조제6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 인증 신청을 위한 상담 이력 보고, 인증심사 관련 각종 보고 등 원활한 인증심사 대행업무 수행을 위한 부수 업무

② 인증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심사대장을 작성할 것

2.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할 것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③ 인증심사대행기관은 인증심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심사 종료일부
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조
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인증의 취소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
을 받은 자에게 취소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조사
· 검토한 후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
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등)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③ 정책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우정사업본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2. 법 제28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

요한 사항으로서 정책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책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정책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위원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하고 수시조사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②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생활물류시설 현황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종사자 및 전문인력 현황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연구 및 신기술 현황
5.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통계 작성·관리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통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또는 간행물 발행

제2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 제23조제6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한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홍보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창업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2.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창업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지원

2. 생활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교육

3. 그 밖에 신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제3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3.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교육 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 교육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은 별표3과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표준화)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포장용기 규격
2. 전자인수증, 송장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표준화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시범사업의 대상 및 선정기준
3.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방법
4. 시범사업 성과의 활용 방안
5. 그 밖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시범사업의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범대상사업 계획서
2. 제1항제2호의 선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범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범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시범대상사업의 내용 및 수행기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제32조(생활물류시설의 설치 지원 등)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친환경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2. 공동 생활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생활물류 서비스사업자의 원활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물류시설 가격기준의 특례) ①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30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분양하는 경우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물류시설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을 포함하며, 직접 입주하여 사용할 목적에 한한다) 이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시설 등의 분양가격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그 이하의 금액(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시행자가 법 제30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임대하는 경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임대요율을 100분의 1의 범위(백분율의 변화량을 말한다)에서 추가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지 면적 중 제1항 제1호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용지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시행자가 제3항의 비율에 따른 물류시설용지 면적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가격기준은 법 제30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미 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4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5조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

- 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9.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개발 사업
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의해 유발되는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예측·추정·산정하고,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 규모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군 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생활물류시설 확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법 제31조에 따른 구체적인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대상 사업의 규모, 적정 생활물류시설 확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6.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종사자·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비스약관(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서비스약관 신규 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서비스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의무
3. 운임의 청구에 관한 사항
4. 운송장에 관한 사항
5. 운송물의 인도 및 처분 등 취급에 관한 사항
6.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유형 등) 법 제34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화주(이하 “화주”라 한다)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종사자로부터 생활물류서비스 운송계약 체결 및 계약유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
2. 화주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생활물류서비스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하는 행위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소비자로부터 받은 생활물류서비스 대가로 받은 금액을 화주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38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9조(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①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합대상
2. 생활물류서비스 부문별 우수상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증진과 생활물류

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하는 특별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비, 연수 및 지도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40조(개선명령 및 권고) 법 제3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 거래구조 개선
3. 법 제27조에 따른 표준의 도입·적용
4. 생활물류서비스 개선 및 소비자 보호

제41조(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1/5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조사·연구사업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교육·훈련

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5.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제4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3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5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⑥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⑦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3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44조(공제조합사업의 운영)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44조제2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자본금의 증액, 주식 등 위험자산의 처분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조

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에 갖추어 두되, 재무상태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
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
3.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조치
4.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조치

⑤ 제4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7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조합의 임직원에게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단체 또는 법인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업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업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업무
4. 법 제25조에 따른 창업의 지원 업무
5. 법 제27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 업무
6. 법 제28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업무
7.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업무
8. 법 제33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 업무
9. 법 제35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업무
10. 법 제36조에 따른 생활물류 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업무

제47조(수수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별표 4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

구 분	기 준
일반 요건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2대 이상 보유)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자본금이 8억원 이상 금액 개인 : 자산평가액 12억 이상의 금액일 것 (3) 위탁계약서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활용할 것
시설 요건	(1) 영업점(택배 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의 영업점을 갖출 것. 다만,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연계 수송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영업점은 자기가 갖춘 것으로 본다. (2) 화물 분류시설 시·도 간 배송되는 물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화물분류 및 일시보관이 가능한 시설을 3개소 이상(면적 3,000㎡이상의 시설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다만,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물 분류시설은 자기가 갖춘 것으로 본다. (3) 화물 취급소 화물의 상·하차 및 보관에 필요한 수만큼 설치하되 영업점 수 이상 설치할 것 (4) 전산망 시설 화물추적 및 운송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주사무소와 영업점, 화물 분류시설, 화물취급소 간을 연결하는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할 것
장비 요건	(1) 기존 택배 사업자의 경우 택배 운송용으로 허가를 받은 차량을 100대 이상 확보할 것. 다만,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하기로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해당 차량이 택배 운송에만 이용되는 경우는 차량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신규 택배 사업자의 경우 택배 운송용 차량 100대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차량 확보 및 운영계획, 운송 위탁계약서 등)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택배 사업자 공고 이후 3개월 내에 차량확보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현행 택배사업자 인정관련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① 공통제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 분사 법인등기부등본
- * 신규사업자는 집화/배송/분류업무(3PL) 증빙용 사업계획서

② 등록기준 충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구분	기준	제출 증빙자료	비고
일반	운송사업허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영업용자산평가액포괄손익 계산서 또는 재무상태표	법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개인인 경우
	위탁 계약서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시설	영업소	1. 본사/영업소 계약서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건물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인 경우
		4.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 사용인 경우
		5. 공동사용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공동 사용인 경우
		6. 전경 사진	
	화물 분류시설	1.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임차 사용인 경우
		3. 공동사용 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공동 사용인 경우
		4. 전경 사진	
	화물 취급소	1. 건물 등기부등본	자가 소유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 사용인 경우
		3. 공동사용 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공동 사용인 경우
		4. 전경 사진	
	전산망 시설	1. 전산장비 내역 시스템	
		2. 영업점, 분류시설, 택배용 화물운송사업자 전산코드	장비 유무 포함
		3. 전산시스템 운영매뉴얼	
		4. 운영현황(홈페이지·앱 등 이용화면)	
		5. 고객센터	
	장비	사업용 차량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2. 운송 위탁계약서 등			
3. (신규)사업용 차량 운용계획서			자동차등록, 용차 및 위수탁계약서 포함

* 계약관계를 확인 가능한 부분(표지, 쌍방 날인 페이지 등)만 제출 가능

** 기준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 입증서류 사본 반드시 첨부

*** 적재합구조변경내역이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갑) 별도 제출

※ 화물취급소와 영업소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 화물취급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증빙자료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 회사에서 '원본대조필 확인'을 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의 유효성은 서류가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고 조치로 감경할 수 있다.
 - 1) 1차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30일 이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3호	경고	등록취소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5호	경고	등록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8호	경고	등록취소

[별표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1. 전문교수요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 가.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강의·실무 경력이 있을 것
 - 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가 있을 것
 - 다. 가목 및 나목과 동등하게 인정되는 실무경력이 있을 것
2. 교육시설 및 설비
 -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전문교육을 실시할 교육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나.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소방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다. 24시간 교육전용으로 교육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되어야 한다)할 것
3. 교육과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것
4. 전문교육 추진 및 운영 계획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 전문교육의 추진 실적 및 운영 계획이 적절할 것
5. 교육운영조직
교육운영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4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6. 예산
교육기관 운영예산을 포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를 지체없이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1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나. 제5조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2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다.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3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상속, 양도·양수,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4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마.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5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바.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1항제6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법 제51조제1항제7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아.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자.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1항제9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약관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10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차.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서비스의 대가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거나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같은 법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1조제1항제11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12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차.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13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14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